

해외에서의 "JPCA 인증강사" 및 "JPCA 인증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자격 부여, 등록, 등록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 1 조(총칙)

이 규정은 해외에서 비영리법인 일본 퍼스널컬러협회(약칭: JPCA, 이하 "본 협회"라 함)가 인증하는 JPCA 인증강사 및 JPCA 인증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의 자격 부여, 등록, 등록갱신 등에 관하여, 본 협회가 정한 "JPCA 인증강사규정" 및 "JPCA 인증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규정"에 준하는 해외 규정으로 한다.

제 2 조(자격 부여)

본 협회가 추천하는 퍼스널컬러 및 색채기능 퍼스널컬러 검정®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자에게 JPCA 인증강사 자격을 부여하고 등록한다.

본 협회가 추천하는 색채이론을 활용하여 실천적이며 실제 각 직종과 연계된 퍼스널컬러 분석과 진단을 할 수 있는 높은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JPCA 인증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자격을 부여하고 등록한다.

제 3 조(자격의 종류와 표기)

각 자격은 다음의 세 종류로 하며, 자격을 표기할 때는 일본어 또는 괄호 안의 영어로 표기한다. 또한 자국어 표기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JPCA 인증강사의 종류는 JPCA 강사(JPCA Instructor), JPCA 본부 강사(JPCA Senior Instructor), JPCA 상석 본부 강사(JPCA Executive Instructor)의 세 종류로 한다.

JPCA 인증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의 종류는 JPCA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JPCA Personal Color Analyst), JPCA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JPCA Senior Personal Color Analyst), JPCA 상석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JPCA Executive Personal Color Analyst)의 세 종류로 한다.

또한 관련 자격으로 JPCA 퍼스널컬러 어드바이저는 (JPCA Personal Color Advisor)로 표기한다.

제 4 조(자격의 정의)

각 자격의 기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JPCA 강사: 본 협회가 추천하는 색채효과를 교육기관 및 외부에 제안할 수 있는 자로, 색채기능 퍼스널컬러 검정®의 교육자로서 본 협회가 인증한 자.
2. JPCA 본부 강사: 본 협회가 추천하는 색채효과를 정확하게 기업 및 외부에 제안할 수 있는 자로, JPCA 강사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JPCA 강사를 교육하는 역할을 가진 자.
3. JPCA 상석 본부 강사: JPCA 본부 강사의 기술을 보유하며 JPCA 강사 및 JPCA 본부 강사를 교육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자.

1. JPCA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색을 판별하는 훈련을 거쳐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색의 속성에 따라 퍼스널컬러를 분석하고 어울리는 색의 분석과 진단이 가능한 자로, 본 협회가 인증한 자.
2. JPCA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퍼스널컬러 분석과 진단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JPCA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를 교육하는 역할을 가진 자로 본 협회가 인증한 자.
3. JPCA 상석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JPCA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및 JPCA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를 교육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자.

제 5 조(JPCA 인증 심의회)

1. JPCA 인증강사 및 JPCA 인증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JPCA 인증 심의회가 수행한다.
 1. JPCA 인증강사 및 JPCA 인증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의 등록 및 갱신에 관한 사항.
 2. 그 외 JPCA 인증강사 및 JPCA 인증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자격에 관한 사항.
2. 심의회 위원은 이사장이 이사 또는 유식자(관련지식 보유자) 중 2명에서 5명을 선임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 6 조(신규등록 요건)

각 자격의 신규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JPCA 강사로 등록하는 자는 본 협회인증 JPCA 퍼스널컬러 어드바이저® 자격자이자 개인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본 협회가 주최하는 JPCA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하고 JPCA 강사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여야 한다.
 2. JPCA 본부 강사로 등록하는 자는 JPCA 강사로서 등록갱신을 1회 이상 완료한 자로, 본 협회가 주최하는 JPCA 본부 강사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여야 한다.
 3. JPCA 상석 본부 강사로 등록하는 자는 JPCA 본부 강사로서 등록갱신을 2회 이상 완료한 자로, 본 협회 주최 JPCA 인증강사 대상 연수회 등에서 강사 또는 보조강사로 활동한 자 중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자로서 이사장이 JPCA 인증 심의회에 추천하여 승인을 받은 자여야 한다.
-
1. JPCA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로 등록하는 자는 JPCA 인증강사로 등록된 자로, 본 협회 또는 JPCA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또는 JPCA 상석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가 주최하는 JPCA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JPCA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인증 시험에 합격한 자여야 한다.

2. JPCA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로 등록하는 자는 JPCA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로서 등록갱신을 1회 이상 완료한 자로, 본 협회가 주최하는 JPCA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인증 시험에 합격한 자여야 한다.
3. JPCA 상석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로 등록하는 자는 JPCA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로서 등록갱신을 2회 이상 완료한 자로, 본 협회 주최 JPCA 인증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대상 연수회 등에서 강사 또는 보조강사로 활동한 자 중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자로서 이사장이 JPCA 인증 심의회에 추천하여 승인을 받은 자여야 한다.

제 7 조(신규등록 신청 및 절차)

제 6 조의 신규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JPCA 인증강사 및 JPCA 인증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는 해당 자격에 대해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등록 신청서를 본 협회에 제출하고 인증료 및 신규등록비, 자격등록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절차 완료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배지 등을 대여한다.
3. 등록기간은 2년간(4월 1일 ~ 2년 후 3월 31일)으로 한다. 단, 신규등록 시에는 승인일로부터 다음 연도 말까지의 2년간으로 한다.
4. 상기 신규등록비, 인증료, 자격등록 연회비는 부칙 1의 별표에 따른다.

제 8 조(등록갱신절차)

JPCA 인증강사 및 JPCA 인증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는 등록 후 2년(등록 첫 해를 포함)마다 등록갱신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1. 등록갱신을 원하는 자는 등록갱신비 및 자격등록 연회비를 지정된 기한 내에 본 협회에 납부해야 한다.
2. 상기 비용 납입 후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한다.
3. 상기 등록갱신비는 부칙 1의 별표에 따른다.

제 9 조(등록갱신요건)

각 자격의 등록갱신요건은 다음과 같다.

1. JPCA 강사 및 JPCA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의 등록갱신은 제 8 조(1) 납입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인정된다.
2. JPCA 본부 강사 및 JPCA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의 등록갱신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1) 2년의 등록기간 내 강좌 담당, 수강, 대외 활동 등의 실적이 부칙 2에 기재된 단위로 합계 10단위 이상이어야 하며, 취득 단위는 2년이 되는 해 말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이때 10단위 중에는 제 12 조(2)의 본 협회주최 세미나(JPCA 연수 강좌를 주로 함)에 등록기간 내 2회 이상 수강한 실적을 포함한다.

- (2) JPCA 본부 강사와 JPCA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가 동시에 등록갱신을 하는 경우
상기 단위 취득 요건을 2년 내 20 단위 이상(각 자격별 10 단위 이상)으로 한다.
3. JPCA 상석 본부 강사 및 JPCA 상석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의 등록갱신은 지도자의
위치에서 제 8 조(1) 납입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인정된다.

제 10 조(등록자격 말소 및 강등)

1. JPCA 인증강사 및 JPCA 인증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가 등록갱신절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각
자격을 말소한다. 단, 개인 정회원으로 계속 재적하는 자는 JPCA 강사 또는 JPCA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로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JPCA 본부 강사 및 JPCA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가 제 8 조(2) 단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JPCA 강사 또는 JPCA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로 강등된다.

제 11 조(혜택 및 권리)

JPCA 인증강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받는다.

1. 색채기능 퍼스널컬러 검정®의 모든 모듈을 교육할 수 있다.
2. 주최 또는 교육하는 조직 단체를 "색채기능 퍼스널컬러 검정®" 단체로 등록하여 본 협회
주최의 검정시험 운영을 수행할 수 있다.
3. 명함 및 프로필에 자격에 따라 일본어 및 영어로 JPCA 강사(JPCA Instructor), JPCA 본부
강사(JPCA Senior Instructor), JPCA 상석 본부 강사(JPCA Executive Instructor)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직함 앞에 "NPO 법인 일본 퍼스널컬러 협회 인증(Certified by the NPO
Japan Personal Color Association)"을 기재할 수 있다.
4. 본 협회 주최 일반 및 회원 대상 강좌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다.
5. 본 협회 주최 JPCA 인증강사 연수 강좌를 연 1 회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단, JPCA 인증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1 회 수강으로 제한된다.
6. 자격에 따라 인증강사 배지를 대여받는다.
7. 본 협회가 지정하는 교재 및 교구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JPCA 인증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혜택과 권리를 부여받는다.

1. 명함 및 프로필에 자격에 따라 일본어 및 영어로 JPCA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JPCA
Personal Color Analyst), JPCA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JPCA Senior Personal Color
Analyst), JPCA 상석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JPCA Executive Personal Color
Analyst)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직함 앞에 "NPO 법인 일본 퍼스널컬러 협회
인증(Certified by the NPO Japan Personal Color Association)"을 기재할 수 있다.
2. 본 협회 주최 일반 및 회원 대상 강좌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다.
3. 본 협회 주최 JPCA 인증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연수 강좌를 연 1 회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단, JPCA 인증강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1 회 수강으로 제한된다.

4. 자격에 따라 인증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배지를 대여받는다.
5. 본 협회가 지정하는 분석과 진단 도구, 교재 및 교구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6. JPCA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및 JPCA 상석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는 상기 (1)부터 (5) 항의 혜택과 함께 JPCA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양성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JPCA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양성 강좌 개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 12 조(노력 의무 및 의무)

JPCA 강사 및 JPCA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는 다음 사항을 노력 의무로 하며, 또한 JPCA 본부 강사, JPCA 상석 본부 강사 및 JPCA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JPCA 상석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는 다음 사항을 의무로 수행해야 한다.

- (1) JPCA 인증강사는 퍼스널컬러 교육자로서의 기술유지와 향상을, 또한 JPCA 인증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는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자격자로서 기술유지와 향상을 도모할 것.
- (2) JPCA 강사 및 JPCA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는 협회 주최 세미나(JPCA 연수 강좌를 주로 함)를 등록기간 내에 수강하여 기술유지 및 향상을 도모할 것. 또한 JPCA 본부 강사 및 JPCA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는 제 9 조 2 항에 따라 등록기간 내 2 회 이상 수강하여 기술유지와 향상을 도모할 것. 또한 JPCA 상석 본부 강사 및 JPCA 상석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는 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지도적 위치에서 기술유지와 향상을 도모할 것.
- (3) 협회 발전을 위해 JPCA 인증강사는 퍼스널컬러 및 색채기능 퍼스널컬러 검정®의 보급 활동에, 또한 JPCA 인증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는 퍼스널컬러 분석과 진단 및 색채효과의 보급 활동을 수행할 것.
- (4) 협회가 퍼스널컬러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 (5) JPCA 인증강사 또는 JPCA 인증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로서 활동하거나, 협회의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인증자격배지 등을 착용할 것.

제 13 조(등록사항의 변경)

신규등록 및 등록갱신 시 제출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즉시 협회에 신고할 것.

제 14 조(등록의 취소)

1. JPCA 인증강사 및 JPCA 인증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가 다음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심의회에 보고하여 등록을 취소한다.
 - (1) 본인이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이때 신청은 구두가 아닌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 (2) 등록갱신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 (3) 등록갱신비, 자격등록 연회비 등 비용이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 (4) 제 12 조의 노력 의무 및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JPCA 인증강사 또는 JPCA 인증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로서 부적합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 (5) 자격의 잘못된 표기 또는 인증 배지 등의 부정 사용 등 본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된 경우.
2. 상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자에게 등록취소를 통지한다.
3. 등록기간 중에 등록취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납입된 비용은 반환되지 않는다.
4. 상기 규정에 따라 JPCA 인증강사 또는 JPCA 인증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인 정회원 연회비미납자는 개인 정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되며, 2년간 동안 회비가 미납된 경우에는 개인 정회원 자격이 보류된다.

제 15 조(재등록)

1. 제 14 조(1)(2)(3) 항목의 사유 및 제 10 조(등록 자격의 말소 및 강등)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JPCA 강사 또는 JPCA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가 재등록을 신청할 경우, 개인 정회원으로 재적 중인 자에 한해 JPCA 강사 또는 JPCA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로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재등록은 재등록 신청서와 재등록 심사료를 납부하고, 과제에 합격함으로써 재등록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재인증료와 자격등록 연회비를 납부하면 재인증된다.
2. 마찬가지로 등록이 취소된 JPCA 본부 강사 또는 JPCA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는 동일 자격으로 재등록할 수 없다. JPCA 강사 또는 JPCA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로 등록을 계속 희망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통해 JPCA 강사로 등록을 지속할 수 있다. 또한, JPCA 본부 강사 또는 JPCA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 5 조 2 항에 따라 인증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합격 후 제 6 조에 따라 절차를 완료하여 JPCA 본부 강사 또는 JPCA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로 인증된다.
3. 상기의 재등록 심사료 및 재인증료는 부칙 1 의 별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4. 제 9 조 및 제 13 조 1 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JPCA 상석 본부 강사 또는 JPCA 상석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는 JPCA 인증강사 또는 JPCA 인증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로 재등록할 수 없다.

제 16 조(인증자격배지 등)

1. 본 협회는 JPCA 인증강사 및 JPCA 인증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의 자격 표시를 위해 인증자격배지 등을 제작한다. 인증자격배지 등의 소유권은 본 협회에 있다.
2. JPCA 인증강사 및 JPCA 인증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에게는 기술 종류에 따라 인증자격배지가 무료로 대여된다. 인증자격배지는 JPCA 인증자격배지를 본체로 하며, JPCA 본부 칭호자 또는 JPCA 상석 본부 칭호자에게는 본체 배지 외에 칭호장이 추가로 대여된다.
3. 제 10 조(등록 자격의 말소 및 강등) 및 제 14 조(등록의 취소)에 따라 등록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여된 인증자격배지등을 본 협회에 반환해야 한다. 또한 JPCA 본부 강사에서 JPCA 강사로, 마찬가지로 JPCA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에서 JPCA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로 강등된 경우, 칭호장만 본 협회에 반환한다.

4. 인증자격배지 또는 칭호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경우, 재발행 신청과 함께 발행 수수료(인증자격배지 4,000 엔, 칭호장 4,000 엔 [모두 우편료 포함, 세금 별도])를 지불해야 한다.
5. 인증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배지 및 칭호장 취급에 관해서는 별도의 취급 문서에 따른다.

제 17 조(기타)

1. 기타 본 규정의 개정 및 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운영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그 취지를 철저히 하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공지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4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수수료 요금표 (※금액은 세금 미포함)

구분	JPCA 강사 JPCA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JPCA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JPCA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JPCA 상석 본부 강사 JPCA 상석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신규등록료 및 갱신료	3000 엔	3000 엔	3000 엔
인증료 (신규등록 시)	10000 엔	15000 엔	
자격등록이자 연회비	10000 엔 (정회원 연회비 3,000 엔 포함)	10000 엔 (정회원 연회비 3,000 엔 포함)	10000 엔 (정회원 연회비 3,000 엔 포함)

※자격 등록자 연회비는, JPCA 인증 강사, JPCA 인증 컬러 분석가의 어느 한 종류의 자격자라도 두 종류의 자격자라도 ¥10,000 으로 한다.

<재인증의 경우>

구분	JPCA 강사	JPCA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재등록 심사료	5,000 엔	5,000 엔
재인증료	12,000 엔	12,000 엔

부칙 2. 제 9 조 2 항에 따른 JPCA 본부 강사 및 JPCA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의 등록갱신요건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활동 내용	단위 수
1	본 협회 주최 JPCA 인증강사 또는 JPCA 인증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연수 강좌, 기타 세미나 수강 (1 회 수강당)	2 단위 x 수강 횟수
2	색채기능 퍼스널컬러 검정® 강좌를 직접 주최하거나, 본 협회 외 요청에 의해 동일 강좌 담당 (모듈별, 담당 학교별)	2 단위 x 담당 횟수
3	본 협회 주최 연수 강좌나 세미나에서 강사로 담당 (1 강좌당)	5 단위
4	색채기능 퍼스널컬러 검정® 또는 JPCA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관련 설명회 담당	1 단위
5	학교, 기업, 단체와의 영업 활동 (성과 여부와 관계없이, 1 개처당)	1 단위
6	본 협회 주최 친목회 참여	1 단위
7	색채기능 퍼스널컬러 검정®이나 본 협회 관련 활동을 SNS 에 게시 (1 기사당, 동일 기사 복사, 공유, 리블로그 제외)	1 단위 (연간 최대 3 단위)

※1. 담당 수업 수는 카운트하지 않으며, 담당 모듈 수와 학교 수를 카운트합니다.

※2. JPCA 본부 강사 및 JPCA 본부 퍼스널컬러 애널리스트 두 자격을 가진 경우, 상기 4, 5, 6 번 항목에서 1 회 1 단위씩 두 자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